

핵심장치등의

[]

안전성 변경신고서

[]

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15일
신고인 (신청인)	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명칭		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등록번호
	대표자명		생년월일(또는 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	
	주소		
핵심장치등	명칭		
	형식		
	제원관리번호		
변경내용			
그 밖의 사항	국가 간 협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핵심장치등에 해당 여부: [] 해당, [] 비해당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0제2항·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또는 신청합니다.			
		년 월 일	
		신고인 또는 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국토교통부장관 귀하			
첨부서류		수수료	
1. 변경신고 하는 경우	1. 변경 전·후 상세 제원 대비표 2. 변경 후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. 변경신고 상세 사유서	없음	
2. 제원관리번호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	1. 변경 전·후 상세 제원 대비표 2. 변경 후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
유의사항	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2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라 자기인증한 핵심장치등으로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핵심장치등을 최초로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란에 '해당 없음'을 기재합니다.			